

# 글로벌 미식 & 관광 연구센터 규정

2024.12.28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연구 센터는 경희대학교 부설 글로벌 미식 & 관광 연구 센터(Global Gastronomy & Tourism Research Center, 이하 ‘본 연구 센터’)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연구 센터는 기후 변화 등의 지구적 이슈와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여, K-푸드를 중심으로 K-컬처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융·복합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관련 산업의 문제 해결을 위해 산·학·관·연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며 실천적 학문을 실현하고자 한다. 나아가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위한 미래 인재 양성과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미식·관광 산업 발전을 선도하고자 한다.

제3조(소재) 본 센터는 본교 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 연구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식품과학, 외식경영, 심리학, 경영학 등의 융복합 연구 활성화
- 글로벌 식문화 트렌드 분석 및 식문화 비교 연구
- K-푸드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심화 연구
-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지속 가능한 식문화 및 관광 산업 전략 및 정책 개발
- 미식과 관광을 융합하는 신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연구
- 식품, 외식 및 관광 전문가 및 산학협력 강화를 통한 문제해결형 연구 수행
- 정부 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연구 프로젝트 수주
- 글로벌 연구 기관, 학계, 업계와의 교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연구 세미나, 포럼 및 학술회의 개최를 통한 외식 및 관광 분야의 교육 및 인재 양성

## 제2장 기구

제5조(조직) ① 본 센터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 연구센터장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연구팀
- ② 위원회 및 각 팀의 구성원은 센터장이 임명한다.

제6조(연구센터장) ① 센터장은 센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소관위원회 심의와 유관 대학(원)장 및 부서장의 추천으로 학무부총장이 임명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최대 10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 임명 시에는 대학(원)장,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센터의 연구원 중 센터장이 위촉한 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센터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매 학기 한 번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센터장이 소집하는 임시 회의를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기본 운영 계획
- 예산 및 결산

3. 규정 및 운영 세칙의 개정
4. 조직 구성
5. 센터장 추천
6. 연구원, 연구조원 등 인사 관련 사항
7.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자문위원회)

- ① 본 센터는 주요 정책 사항 및 연구 계획에 대한 자문과 산학협력 연구를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자문위원회는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4명 이내로 이루어지며, 위원은 센터장이 임명한다.
-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연구팀)

- ① 연구팀은 2개의 팀으로 구성된다.
  1. 글로벌 푸드 연구팀
  2. 미식 & 관광 연구팀

### 제3장 재정과 회계

#### 제10조(재정)

- 본 센터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교내 연구비
  2. 정부, 기업 등 대외 연구과제 수주금 및 지원금
  3. 연구 보조금 및 기부금
  4. 기타

#### 제11조(회계 등)

- ① 본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
- ② 본 센터의 예산 편성 및 재정 관리는 본교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 제4장 기타

#### 제12조(공간 등 반납)

본 센터가 해산할 때 시설과 기자재 등의 재산은 폐쇄 다음 달 본교에 귀속된다.

#### 제13조(보칙)

- ① 본교 「부설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 규정에 따른다.
- ②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정한다.

### 부칙

본 규정은 2024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